

전국 재해구호협회

2003 연보

인사말



자연재해는 남의 일만이 아니며 결코 사각지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히 지난해 8월 집중호우와 태풍 루사, 지난 2월 발생한 대구지하철 참사로 사상유례없는 막대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수해를 당한 이재민과 대구지하철참사 유가족들을 위해 범국민적 성금운동을 벌였고 국민여러분들의 성원으로 각각 총 1천4백48억원과 658여억원의 성금을 모았습니다.

수해성금은 2400여세대/ 7만 1000여명의 이재민에게 총 1천300여억원이 신속하게 전달됐고 2만 5000여점의 구호물품세트등 총 260여만점의 물품이 긴급지원됐습니다.

대구지하철참사성금 역시 지난 5월 대구시에 직접 656여억원을 전달했습니다. 매년 재해극복활동에 앞장서온 협회는 지난해 12월 전국재해구호협회라는 법정단체로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전국재해구호협회 임직원들은 국내유일의 전문적인 재해구호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일것입니다.

지난해 사상최악의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수재와 지난 2월 대구지하철 참사라는 인재발생후 보내주신 국민여러분들의 성금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협회는 앞으로도 재해로 고통당하는 이웃들과 국민여러분들을 잇는 가교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 6월 전국재해구호협회 회장 최 학 래

2003년 연보목차

- 인사말
- 목차

1 협회소개

6p

창립배경
창립목적
설립역사
사업내용
협회조직
역대회장 소개
회원명단

2 2002년 구호현황

10p

2002년 재해피해상황
2002년 재해의연금 모금현황
2002년 재해의연금 지원현황
2002년 재해의연품 모집현황
2002년 재해의연품 지원현황

3

2003년
재해의연금
모금계획

16p

목적

모금내역

의연금품 사용

재해의연금 모집절차

재해의연금 지원절차

재해의연금품 지원절차

4

재해
일반현상

20p

일반적인 재해 분류

자연재해 발생요인

재해 발생 추이

5

2003년
재해구호지침

32p

개요

긴급재해구호

이재민 구호 및 복구지원 내용

의연금품 모집·관리 및 지급

재해구호물자 비축 및 관리

재해구호기금 관리

행정사항

6

2003년
구호활동
보도일지

48p

1 | 협회소개

● 창립배경

계절적 집중호우로 인해 연례행사처럼 수해가 발생함에 따라 각언론사는 정부수립 이전부터 자율적으로 "이재민 의연금품 모집 및 배분활동"을 시행하여 왔다. 그러나 각언론사에서 모금 및 모집을 한 의연금품은 각언론사의 자율적 구호기준에 따라 집행되었기 때문에 중복되거나 누락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효율적인 구호가 되지 못했다. 이것이 1961년 7월에 발생한 대규모 수해를 기점으로 전국의 언론사가 주축이 되어 "전국수해대책위원회"를 발족시켜 사회각계의 대표자들과 함께 구호사업의 일원화를 추진하게 되었다.

● 창립목적

전국재해구호협회는 법정단체로 전부와 역할을 분담해 불시에 발생하는 재해의 복구와 이재민 구호의 효율화를 높이는 데 있다. 이웃의 어려움과 고통을 서로 돕는 동포애를 바탕으로 국민의연금품을 모집·관리·배분하는 것 뿐 아니라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직접 구호활동에 참여를 함으로써 조속한 이재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한다.

● 설립역사

- 1961. 07. 13 전국수해대책위원회 조직
- 1961. 09. 26 (가칭) 전국재해대책위원회 창립준비위원회 조직
- 1961. 10. 26 전국재해대책위원회 창립총회
- 1961. 11. 07 전국재해대책위원회 발족
- 1964. 09. 03 사회단체 등록
- 1964. 10. 31 전국재해대책협의회로 개칭
- 1967. 05. 30 7월을 '재해구호의 달'로 제정
- 1968. 10. 15 사단법인으로 개편
- 1970. 05. 10 '사랑의 열매' 전국기관 및 학교·기업에 배부
- 1979. 05. 30 문교부, '사랑의 열매' 모금 시행승인
- 2001. 12. 19 재해구호법 제정
- 2002. 12. 10 전국재해구호협회 개칭

● 사업내용

가_ 재해의연금품 모집 및 배분사업

- ① 재해로 인한 이재민 구호를 위해 의연금품의 모금 및 모집운동 전개
- ② 각언론사 및 본회를 통해 기탁된 의연금품의 관리
- ③ 본회에 보관 및 관리중인 의연금품의 효율적 배분

나_ 재해구호물품 지원사업

- ① 신속하고 체계적인 구호를 위한 구호물품의 준비와 구호물품 보관을 위한 창고 운영
- ② 효율적인 구호물품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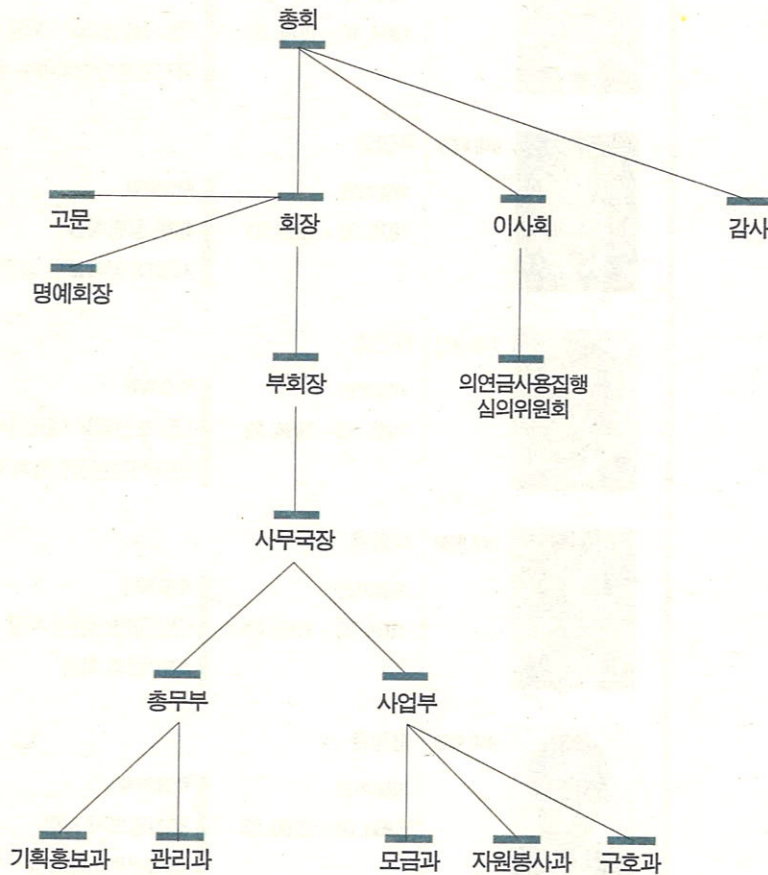
다_ 재해구호 연구·조사사업

- ① 재해의 구호 및 예방에 관한 연구활동
- ②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선진화된 구호통합체계 구축
- ③ 국제협력을 통한 중·장기적인 재해구호연구의 활성화
- ④ 전기적인 간행물 및 세미나를 통한 재해구호 연구활동의 홍보 및 알상화

라_ 재해자원봉사 등 재해구호활동

- ① 재해구호에 직접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의 모집·관리
- ② 재해발생 지역에 자원봉사자 활동의 운영

● 협회 조직



● 역대회장 소개



초대회장 유진오

재임기간
1961. 07 ~ 1961. 09

주요약력
초대법제처장
(전) 고려대학교 총장·통일원 고문·국정자문위원



2대 회장 류달영

재임기간
1961. 09 ~ 1963. 04

주요약력
협회 창립회장
서울대 명예교수·성천문화재단 이사장



3대 회장 이관구

재임기간
1963. 05 ~ 1964. 01

주요약력
한국신문편집인협회 초대회장
(전) 한국신문연구소장



4대 회장 임병직

재임기간
1964. 02 ~ 1964. 10

주요약력
초대 외무부 장관
(전) 워싱턴한인협회 수석위원·국제연합 한국협회 이사



5대 회장 고재욱

재임기간
1964. 10 ~ 1976. 06

주요약력
(전) 동아일보사 회장
국제언론인협회(IPI) 한국위원장·전국기자협회장



6대 회장 류달영

재임기간
1976. 06 ~ 1985. 03

주요약력
협회 창립회장
서울대 명예교수·성천문화재단 이사장



7대 회장 류건호

재임기간
1985. 03 ~ 1994. 02

주요약력
(전)조선일보 대표이사
한국신문편집인협회 회장



8대 회장 최종률

재임기간
1994. 03 ~ 1998. 04

주요약력
(전)경향신문사 사장
ABC협회 회장



9대 회장 방상훈

재임기간
1998. 04 ~ 2000. 03

주요약력
조선일보사 사장
국제언론인협회(IPI) 한국위원장

● 임원명단

직위	성명	소속기관
회 장	최학래	한겨레신문사 고문
부회장	김대성	제주일보사 사장
"	김상기	대전문화방송 사장
이 사	김득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	박수만	한국신문협회 사무총장
"	법 장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	손길승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	송도균	(주)SBS 사장
"	오건환	한국방송협회 사무총장
"	윤석인	한국자원봉사단체협의회 사무총장
"	은방희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	이영구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
"	이 응	한국신문인크(주) 사장
"	장대환	매일경제신문사 사장
"	장재구	한국일보사 회장
"	정연주	한국방송공사 사장
"	채수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최문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사무총장
"	한남규	중앙일보사 수석부사장
"	한중광	(주)현암i 대표이사
감 사	서문훈	대신회계사무소 대표
"	손인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 회원명단

직위	성명	소속기관
회 원	강대진	전국극장연합회 회장
"	권해욱	대한주택공사 사장
"	김숙희	대한YWCA연합회 회장
"	김영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	김재철	한국무역협회 회장
"	김정국	문화일보사 사장
"	김학준	동아일보사 사장
"	노승숙	국민일보사 사장
"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	사광기	세계일보사 사장
"	유승삼	대한매일신보사 사장
"	이금희	(주)문화방송 사장
"	이남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	이시백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	이윤중	산림조합중앙회 회장
"	정대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	차석홍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	한광수	서울특별시 의사회 회장

2 | 2002년 구호현황



● 2002년 재해 상황
(중앙재해대책본부)

가_ 피해일시 : 2002년 1월 1일~12월 31일

나_ 피해원인 : 호우 및 태풍피해

다_ 피해내용

- ① 인명피해 : 사망·실종 270명
- ② 이재민 : 24,258세대/ 71,204명
- ③ 침수면적 : 61,579 ha
- ④ 총피해액 : 6,115,292백만원
 - 주택 피해 : 15,792백만원 (전파·반파 : 8,811동)
 - 선박 피해 : 4,782백만원 (전파·반파 : 875척)
 - 농경지 피해 : 436,872백만원 (유실·매몰 : 19,890 ha)
 - 도로교량 피해 : 843,622백만원 (물량 : 3,288개소)
 - 하천 피해 : 1,766,981백만원 (물량 : 11,470개소)
 - 수리시설 피해 : 504,947백만원 (물량 : 10,445개소)
 - 기타 피해액 : 1,931,526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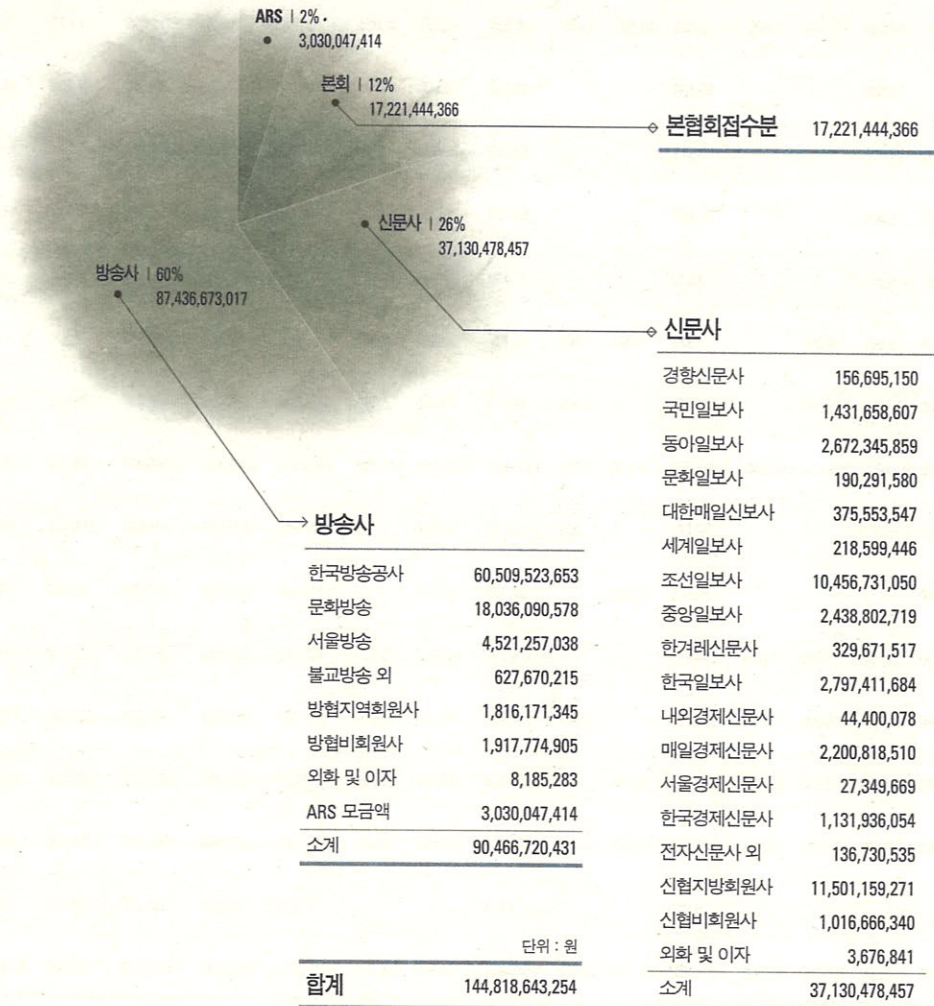
라_ 시도별 피해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시·도	인명	재산
서울시	-	7,512
부산시	7	18,415
대구시	1	4,306
인천시	-	2,917
광주시	3	5,693
대전시	-	714
울산시	3	13,798
경기도	-	85,806
강원도	149	2,749,502
충북도	11	259,420
충남도	2	75,834
전북도	18	320,641
전남도	14	440,452
경북도	39	937,017
경남도	23	1,132,869
제주도	-	60,396
계	270	6,115,292

● 2002년
재해의연금
모금현황

(2002년 12월 31일
최종 마감)



● 2002년
재해의연금
지원현황

가_재해별 지원현황

재해별 구분	지원금액	지원일자	단위 : 천원		
			사망	부상	이재민
8월 집중호우 이재민 구호비	1,021,987	08월 30일			
8월 집중호우 특별위로금	17,554,900	08월 30일			
태풍 "루사" 피해 특별위로금	58,798,540	09월 17일			
8월 집중호우 법정구호비 추가분	16,632,000	09월 17일			
서리, 우박피해 및 태풍 "리미순" 피해 위로금	283,580	09월 17일			
태풍 "루사" 피해 구호비	5,542,266	10월 18일			
태풍 "루사" 위로금 추가분	98,980	10월 18일			
특별재해지역 특별위로금	42,662,200	10월 18일			
우박등 농업재해피해 구호비	6,039	11월 18일			
태풍 "루사" 피해 추가 특별위로금	4,000,000	12월 13일			
합계	129,985,124				

나_시도별 지원현황

구분	합계	법 정 구 호 비										위 로 금					특별재해 지역 특별위로금		
		사망		부상		이재민 구호비 (장기구호)	생계 보조	생계 지원	소계	사망 실종	부상	주택전파	주택반파	주택침수	월동 대책비	연료비		명절 위로금	소계
		세대주	세대원	세대주	세대원														
서울	5,405,816	30,000	15,000			6,876			51,876	60,000	-	-	-	5,251,800	10,200	12,240	17,000	5,351,240	2,700
부산	473,044	10,000	40,000	5,000	7,500	5,089	97,500	1,475	166,564	90,000	20,000	3,000	6,000	114,600	9,600	8,880	16,000	268,080	38,400
대구	247,316		5,000			15,136			20,136	10,000	-	-	-	58,800	22,200	26,280	37,000	154,280	72,900
인천	482,473	20,000	20,000			313			40,313	60,000	-	4,040	14,520	358,800	-	-	-	437,360	4,800
광주	680,917	20,000	5,000			25,257			50,257	30,000	-	18,000	1,500	1,200	48,300	54,960	80,500	234,460	396,200
대전	79,005	10,000	5,000			2,085			17,085	20,000	-	-	-	-	3,600	4,020	6,000	33,620	28,300
울산	100,822	20,000	5,000	5,000		335	5,000	447	35,782	30,000	5,000	3,000	3,000	18,000	1,500	840	2,500	63,840	1,200
경기	1,527,006	40,000	20,000	5,000		25,703		8,003	98,706	80,000	5,000	24,000	106,500	948,000	59,880	49,020	100,000	1,372,400	55,900
강원	72,075,367	980,000	190,000	205,000	55,000	2,068,751	35,000	2,236	3,535,987	1,360,000	315,000	5,193,000	3,802,500	16,308,600	4,028,700	3,915,480	6,714,500	41,637,780	26,901,600
충북	2,433,945	60,000	15,000			39,977		268	115,245	90,000	-	303,000	207,000	888,000	108,600	82,500	181,000	1,860,100	458,600
충남	1,113,188	50,000				25,628	12,500		88,128	50,000	-	135,000	102,000	280,200	60,000	48,960	100,000	776,160	248,900
전북	2,455,116	80,000	40,000	5,000	5,000	44,356			174,356	160,000	15,000	453,000	254,420	367,200	135,300	100,140	225,500	1,710,560	570,200
전남	14,781,645	80,000	35,000	15,000		393,324		1,341	524,665	150,000	15,000	537,000	583,500	984,000	828,000	776,880	1,380,000	5,254,380	9,002,600
경북	8,704,619	220,000	65,000	15,000	17,500	200,329	10,000		527,839	350,000	50,000	795,000	474,000	2,364,600	433,200	402,480	722,000	5,591,280	2,585,500
경남	19,043,997	130,000	45,000	50,000	12,500	847,735	42,500	2,862	1,130,597	230,000	75,000	2,664,000	405,000	1,982,400	1,611,800	1,283,200	2,353,000	10,604,400	7,309,000
제주	380,848					9,388			9,388	-	-	36,000	78,000	54,000	48,600	25,260	81,000	322,860	48,600
합계	129,985,124	1,750,000	505,000	305,000	97,500	3,710,292	202,500	16,632	6,586,924	2,770,000	500,000	10,168,040	6,037,940	29,980,200	7,409,480	6,791,140	12,016,000	75,672,800	47,725,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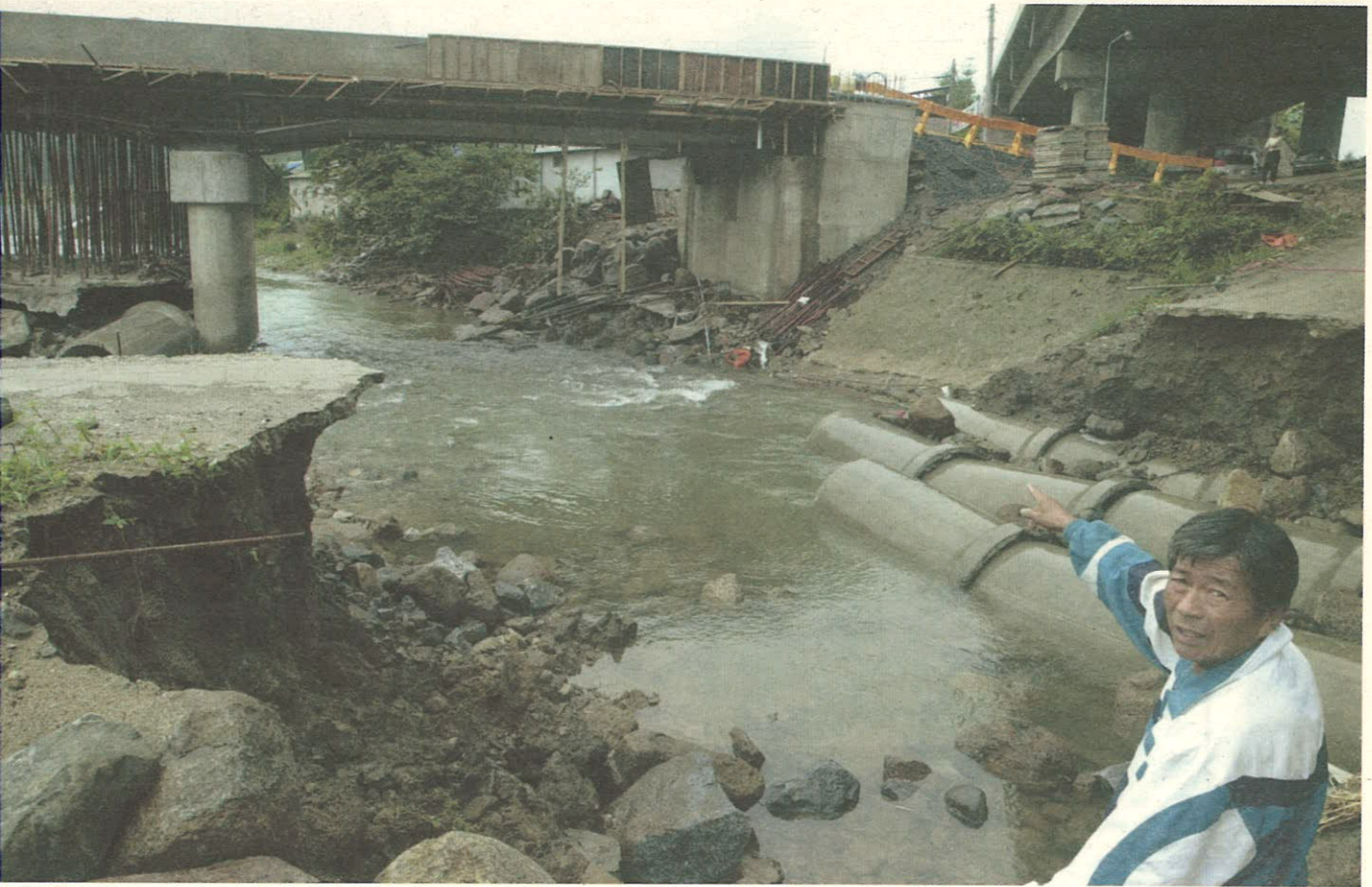


다_2002년 의연금 지원기준

단위: 천원

구분	단위	금액	특별재해지역 특별위로금	비고	
사망자	세대주	인	20,000	법정구호비 및 위로금 포함	
	세대원	인	15,000		
부상자	세대주	인	10,000	법정구호비 및 위로금 포함	
	세대원	인	7,500		
장기 구호비	세대	1일 2,294원 x 구호일수 x 15%		법정구호비 의연금 부담분	
생계 보조비	세대	2,500		법정구호비 의연금부담분 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세대를 대상	
주택전과	세대	4,040	1,200	전파위로금, 명절위로금, 월동대책비, 연료비 포함금액	
주택반과	세대	2,420	600	반파위로금, 명절위로금, 월 동대책비, 연료비 포함금액	
침수주택 (상가포함)	세대	600	800	침수주택,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포함	
농·어가 피해 장기구호 세대	2개월	세대	920		
	4개월	세대	1,040	1,300	특별위로금은 2ha미만 50-80% 피해농가
	6개월	세대	1,160	2,700	특별위로금은 2ha미만 80% 피해농가

● 태풍 "루사" 피해 특별재해지역 특별위로금 중 침수주택에 대한 세대당 80만원의 국고로 지원



● 2002년
재해의연품
모집현황

품명	이월분	구입분	접수분	기타	소계
응급구호세트	10,000	10,000	-	-	20,000
재기구호세트	5,000	-	-	-	5,000
소계	15,000	10,000	-	-	25,000
의류 (점)	49,335	-	446,386	16,575	512,296
침구류 (매)	1,383	5,000	3,868	326	10,577
버너 (대)	1,800	1,300	5,370	11	8,481
생필품 (점)	180,798	-	775,890	8,949	965,637
신발류 (족)	6,316	-	20,473	551	27,340
세제류 (점)	2,461	-	52,655	8,395	63,511
의약품 (점)	-	40,000	89,770	-	129,770
학용품 (점)	-	-	308,907	-	308,907
식품류 (점)	-	-	883,009	-	883,009
생수 (박스)	2,000	20,000	17,970	-	39,970
라면 (박스)	-	-	31,967	-	31,967
식기류 (점)	9,120	-	9,579	546	19,245
양수기 (대)	5	-	-	-	5
건축자재 (점)	-	-	200,000	-	200,000
백미 (kg)	-	40,000	19,293	-	59,293
기구 (점)	-	-	516	-	516
벽지 (평)	-	-	55,055	-	55,055
기타 (점)	299	-	971	4	1,274
소계	253,517	106,300	2,921,679	35,357	3,316,853



● 2002년
재해의연품
지원현황

품명	전라남도	경상남도	충청북도	강원도	서울시	경상북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광주광역시	군산시	구호물품 세트화	소계
응급구호세트	200	1,400	1,000	15,800	-	1,600	-	-	-	-	-	20,000
재기구호세트	-	2,000	-	-	3,000	-	-	-	-	-	-	5,000
소계	200	3,400	1,000	15,800	3,000	1,600	-	-	-	-	-	25,000
의류 (점)	-	41,874	17,899	150,026	-	-	6,193	821	2,950	-	-	219,763
침구류 (매)	-	2,080	2,453	2,404	-	-	-	81	4	-	-	7,022
버너 (대)	-	800	-	4,284	-	-	-	-	-	-	-	5,084
생필품 (점)	-	131,369	71,862	307,492	-	50,500	-	1,023	24	-	7	562,277
신발류 (족)	-	7,774	-	2,188	-	-	-	-	-	-	-	9,962
세제류 (점)	-	3,486	26,829	17,720	-	5,520	-	65	31	100	-	53,751
의약품 (점)	-	19,600	4,005	106,165	-	-	-	-	-	-	-	129,770
학용품 (점)	-	14,376	125,486	169,042	-	-	-	-	3	-	-	308,907
식품류 (점)	-	132,090	153,051	472,028	-	62,800	63,000	40	-	-	-	883,009
생수 (박스)	-	6,171	2,755	20,960	-	700	2,734	-	-	-	-	33,320
라면 (박스)	-	8,224	4,777	9,726	-	4,700	4,520	-	20	-	-	31,967
식기류 (점)	-	3,056	196	8,209	-	-	-	14	2	-	-	11,477
양수기 (대)	-	-	-	-	-	-	-	-	-	-	-	-
건축자재 (점)	-	-	100,000	100,000	-	-	-	-	-	-	-	200,000
백미 (kg)	-	90	8,743	50,340	-	-	-	-	80	-	-	59,253
가구 (점)	-	-	411	105	-	-	-	-	-	-	-	516
벽지 (평)	-	28,511	11,544	15,000	-	-	-	-	-	-	-	55,055
기타 (점)	-	135	-	965	-	-	-	-	-	-	-	1,100
소계	-	399,636	530,011	1,436,654	-	124,220	76,447	2,044	3,114	100	7	2,572,233

3 | 2003년 재해의연금 모금계획

● 목적

매년 뜻하지 않게 발생하는 각종 재해로 많은 사람들이 귀중한 인명과 재산손실을 당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도 재해예방과 사후대책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한정된 인력과 재정으로 인하여 미약한 부분이 많은바, 그 동안 크고 작은 재난이 닥칠 때마다 동포애와 지금도 면면히 이어져 오고 있는 환난상휼의 오랜 전통을 바탕으로 온 국민이 힘을 합하여 슬기롭게 재난을 극복해 왔다. 본 협회는 이런 전통을 계승하여 앞으로 천재지변이 발생되면 신속히 재해이재민을 구호하기 위한 의연금품 모집사업을 범국민 운동으로 전개하여 실의에 잠겨있는 이재민들이 생활안정을 이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것이다.

● 모금 목표액

500억원

● 모집기간

대규모 재해발생시

● 모금내역

가_기탁모금 및 ARS모금

나_지역 : 전국

다_대상 : 재해이재민 구호를 위하여 각 신문사 및 방송사 등에 기탁되는 국민의연금품과 해외동포로부터 기탁되는 의연금품.

라_방법

- ① 각 신문사 및 방송사에 기탁되는 의연금은 종합구호계획에 의한 중앙일원화 방침에 따라 한국신문협회, 한국방송협회 및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에서 집금하여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 단, 신문·방송협회에 가입되지 않은 언론사는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직접 송금.
- ② 중앙언론기관에 접수된 의연품은 전국재해구호협회에서 수령하여 재해지역 행정기관의 요청 및 재해지역 이재민기구수와 재해피해액에 의거 균등하게 배분하고, 재해피해지역 언론기관에 접수된 의연품은 해당 시도 재해대책본부 및 지역 적십자사에 전달하여 직접 이재민에게 배분. 단, 재해발생지역이 아닌 시도 및 언론기관에 접수된 의연품은 해당 적십자사에 전달하거나 본협회와 협의하여 전달함.
- ③ 각 시·도 및 시·군·구에 기탁되는 수재의연금은 자치단체에서 접수를 대행 언론기관이나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이관.

● 모집자의 의뢰에 의해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는 가능.

④ 재해지역 행정기관에 지정기탁된 수재의연금은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에 의하여 사용하되 사용내역을 보건복지부 및 전국재해구호협회에 통보하여 재해의연금 지급시 정산.

⑤ 언론기관은 특정인이나 전달처를 지정한 수재의연금품은 접수할 수 없으며 기탁자가 지정 기탁을 희망할 경우 직접 희망지역에 전달.

⑥ 공무원 모금

보건복지부 및 행정자치부장관의 협조를 받아 국가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중사급 이상, 국영기업체 및 산하단체, 금융기관근무 임직원 등으로부터 이재민구호를 위한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재해의연금품을 기탁토록 하고, 모집된 의연금품은 언론기관에 전달토록 협조 의뢰.

⑦ 기업체 모금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는 산하 회원 기업체에 협조서한을 발송하고 이재민구호를 위한 의연금모금에 적극 참여하여 주도록 의뢰.

⑧ 각 사회단체 및 종교단체에 서한을 발송하고 재해의연금 모금에 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의뢰.

● 의연금품 사용

가_ 모금된 의연금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해구호비로 지원하거나 보건복지부 훈령 제120호 『의연금 관리·운용규정』에 따라 특별위로금으로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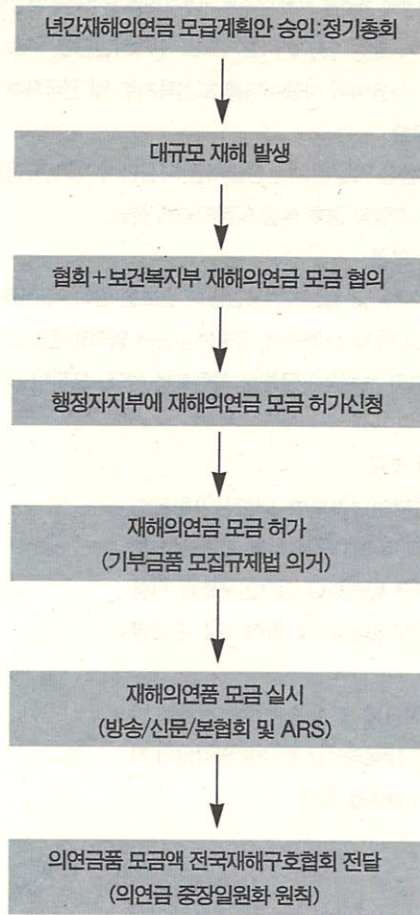
나_ 모집된 의연품은 재해지구 재해대책본부 및 대한적십자사에 배정하여 이재민에게 배분.

다_ 모집된 의연금 중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재해의연금품 모집·집행의 사업비 및 홍보비 등으로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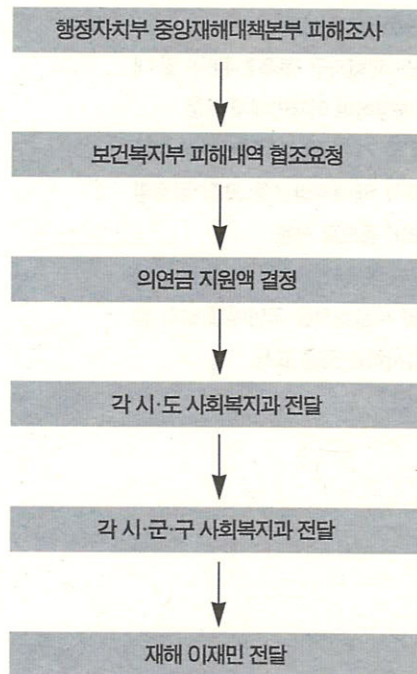
라_ 의연금품 모집과 복구사업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모집내역 및 사용실적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동포애에 감사하는 뜻을 표시.



● 재해의연금품
모집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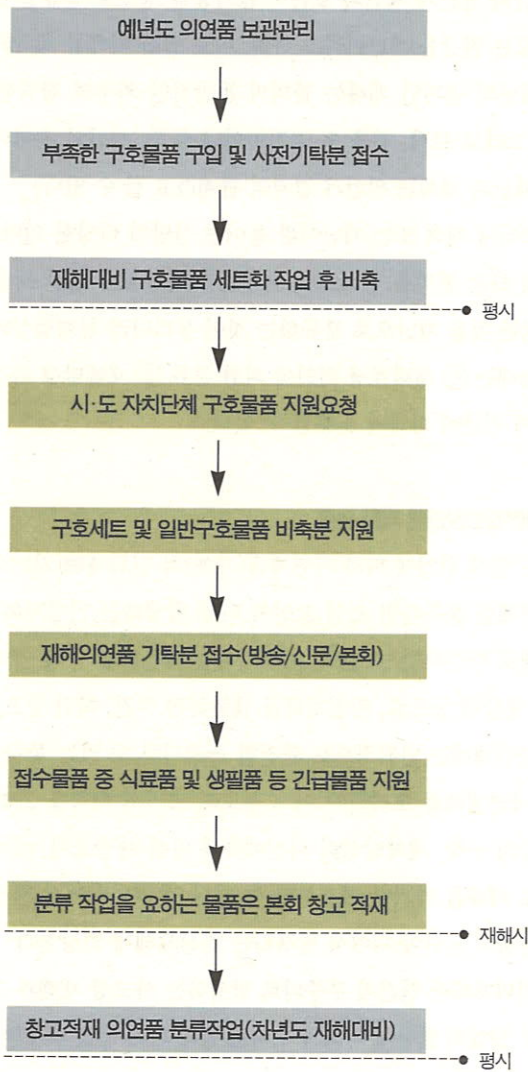
● 재해의연금
지원절차



●● 피해조사는 전국재해구호협회가 아닌 행정기관 합동조사 결과를 행정자치부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집계함으로써 피해신고는 재해대책본부 또는 시·군·구 사회복지과에 함.



● 재해의연품
지원절차



● 구호물품 세트화는 이재민 구호에 필요한 구호물품을 사전에 종류별로 세트화하여 제작·보관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이재민 구호를 수행하기 위한 작업으로 응급구호 세트와 재기구호세트 2종류로 나뉜다.

응급구호세트는 재해발생초기 이재민이 가장 필요로하는 공통물품만을 세트화한 것으로 의류(체육복, 속옷), 이불, 생필품(치약, 치솔, 수건, 비누)등이 주를 이루며, 재기구호세트는 수용이재민이 긴급구호 후 귀가하거나 이웃집 등에 거주하는 이재민에게 지원되는 것으로 식기세트나 취사 세트 등으로 구성된다.

4 재해 일반현상

● 일반적인 재해분류

일반적으로 인간의 사회적 생활과 인명, 재산이 이상 자연현상 등과 같은 외력에 의해 피해를 받았을 경우 이를 재해라고 하며, 재해를 유발시키는 원인을 재난이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생존과 재산의 보존이 불가능할 정도로 생활질서를 위협받은 상태를 초래시키는 사고 또는 현상을 재난이라고 하며, 이로 인한 피해를 재해라 한다.

재난의 결과인 재해는 불의의 돌발적인 외부의 강력한 힘에 의해서 인명피해, 가축의 폐사, 그리고 토지, 건물 등 공작물이나 물품, 시설의 손괴와 망실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재난과 재해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재해 또는 재난이란 용어는 상당히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이를 발생하게 하는 원인을 중심으로 천재인 자연현상에 의한 것을 재해로, 인위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을 재난으로 분류하는 것이 우리나라 현행법상의 분류이다.

재해는 ① 재해발생 원인에 의한 분류 ② 재해발생 과정의 시간적 차이에 의한 분류 등 몇 가지 기준에 의하여 분류할 수 있다.

가_ 자연발생원인에 의한 분류

재해는 발생 원인에 따라 자연재해(재해)와 인위재해(재난)로 나눌 수 있다.

자연재해를 분류하면 기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기상재해와 지반의 운동으로 발생하는 지질재해로 대분류할 수 있고, 기상재해를 세분하면 풍해, 수해, 설해, 해일, 뇌해, 한해, 냉해, 상해, 병충해 등으로, 지질재해를 세분하면 지진, 화산 등으로 세분할 수 있다.

자연재해는 인위적으로 완전히 근절시킬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자연재해를 초래하는 어느 정도의 크기의 외력을 고려한 시설물의 설계 및 시공, 방어 시설물의 구축, 재해발생의 사전예측에 따른 예방조치, 재해발생시의 신속한 복구대책 수립 등으로 재해를 막거나 최소화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자연재해는 이상 기상현상이 원인이 되어서 발생하는 기상재해에 해당한다.

인위재해란 인간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사고성 재해와 고의적으로 자행되는 범죄성 재해 그리고 산업의 발달에 따라 부수되는 공해 피해 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의 재난을 총칭한다.



나_ 재해발생과정의 시간적 차이에 의한 분류

재해발생 과정의 시간적 차이에 따라 급성재해와 만성재해로 나눌 수 있다. 급성재해란 그 발생과 진행이 상대적으로 빨리 이루어지는 재해로서 폭풍, 홍수, 산불, 해일, 산사태, 위험 물질 누출, 폭발 등을 들 수 있으며, 만성재해란 그 진행이 느린 재해로서 전염병, 병충해 등의 농작물 피해와 환경과피 등이 있다.

만성재해는 상대적으로 재해의 정보전달과 대응에 시간적 여유가 많으므로 대응과 피해복구의 사전준비가 크게 요구되지 않으며, 전국적인 또는 전세계적인 범위에서의 자료의 전달과 교환을 통해 재해방지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급성재해는 만성재해에 비하여 급격하고 또는 국지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전대비 및 재해발생시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

● 자연재해 발생요인

가_ 자연적 요인

우리나라는 매년 여름철에 심한 호우로 인한 수위상승으로 저지대가 범람하여 인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이와 같은 수해는 거의 매년 지역적으로 발생하여 몇 년에 한번은 극심한 홍수를 일으키는데 그 원인은 화북지방, 양자강, 동지나해 방면에서 빈번히 발생하여 이동해 오는 저기압, 장마전선, 그리고 남양군도 부근에서 발생하여 북쪽으로 이동해 오는 태풍 등이 주원인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수해와 풍해가 개별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드물고 보통 호우가 내릴 때는 바람을 동반하기 마련이다. 또한 강한 태풍은 폭풍 해일 현상을 일으키기도 하고 심한 파도를 일으켜 조업 중이거나 항해중인 선박을 파손, 침몰시키는 등 육지뿐만 아니라 해상에도 막대한 피해를 일으킨다.



① 태풍

폭풍우는 주로 저기압에 의해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여름철에 열대지방의 해상에 많이 발생하는 열대성 저기압 또는 온대 혹은 한대의 경계지대에 흔히 발생하는 온대성 저기압이다.

주로 여름철에 열대지방의 해상에서 발생하는 열대성 저기압이 해상의 막대한 수증기를 포함한 수렴기류를 강제로 상승시켜 수증기가 응결할 때 방출한 잠열로 계속 세력을 증가시킴으로서 중심부근의 풍속이 17m/sec 이상으로 발달되는 것을 태풍이라 한다.

최근에는 기상 레이더와 인공위성의 도움으로 그 실체가 거의 밝혀지고 있다. 바람은 북반구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중심으로 몰려들고 중심부근에 가까워질수록 비바람은 점점 강해지며, 중심에서 50~60km의 거리에 이르면 절정을 이룬다. 태풍중심으로 갈수록 비바람은 점차 약해져서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에서는 바람이 약하고 구름도 없는 구역이 원형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을 '태풍의 눈' 이라고 부른다. 태풍의 눈에 해당하는 구역에는 하강 기류가 있어 하늘은 맑게 개이며 그 크기는 태풍에 따라 직경이 수십 km에서 수백 km에 달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중심기압은 900~990 hPa의 범위이고 강우현상은 태풍의 눈을 제외한 중심의 전방에서 광범위하게 분포된다. 대부분은 전선을 동반하지 않으며 진행방향으로 볼 때 우측이 좌측에 비하여 바람도 강하고 강우량도 2배 정도로 많다.

태풍은 주로 북태평양의 서부인 필리핀 동쪽의 넓은 해상에서 발생하여 북서쪽으로 서서히 세력이 증가하면서 이동하다가 동지나해 부근에 이르면 진로를 바꾸어 북북동 혹은 북동쪽으로 대략 포물선을 그리면서 이동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태풍의 발생지점과 이동 경로는 항상 일정하지 않고 계절에 따라 변하며 때때로 예상외의 경로를 따라 이동하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태풍은 매년 그 발생 회수가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일년에 약 26개 정도가 발생하며 그 중 2, 3개 정도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쳐 인명과 재산의 손실을 초래한다.

태풍이 건조한 육지로 상륙하면 점차 쇠약해지지만 이 때부터 호우와 폭풍이 위력을 떨치면서 막대한 피해를 주게 된다. 우리나라는 비가 많이 내리는 7, 8월과 태풍 내습기가 겹치기 때문에 피해가 더 크게 나타난다. 때로는 9월에 태풍이 도달하여 피해를 입기도 하며 6월에도 태풍의 통과로 인한 피해를 받기도 한다.

② 호우

호우란 일반적으로 큰비와 같은 뜻으로 사용되며, 특히 단시간에 많은 양이 내리는 비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호우는 각각의 강우 기후구에서 평균적인 강우 강도의 우량을 훨씬 상회하는 강한 강우현상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다.

집중호우란 명확한 기준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하루 강수량이 연 강수량의 10% 이상 일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열대의 스콜을 연상케 하며 1일 동안에 연 총 강수량의 몇 분의 1에 해당하는 비가 쏟아지기도 하고 1시간에 100mm를 넘는 비가 내리기도 한다.

집중호우는 대단히 습한 많은 수증기가 장마전선에 유입할 때 발생하며 지형의 영향으로 더욱 국지성을 띤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집중호우는 상층에 나타나는 제트 기류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음이 밝혀졌다. 습한 공기가 제트 기류에 의해 빨려 올라가 심한 상승기류가 되고 이것이 상층에서 냉각하여 떨어지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장마철의 비는 짧은 시간에 맹렬히 쏟아지는 호우이다. 1일 강수량이 300mm를 넘는 경우도 많고, 1시간 동안 100mm를 넘는 집중호우도 곳곳에서 기록되고 있다.





1996년 7월 경기북부지역의 파주,문산,연천 및 1998년 8월 서울,경기 등 우리 나라 전역을 강타한 게릴라성 호우는 많은 홍수를 일으켜 큰 피해를 주었던 예들이다.

③ 온대성 저기압

온대성 저기압이 발달하면 강풍과 호우 혹은 폭설을 동반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피해도 무시할 수 없다. 온대성 저기압은 따뜻하고 습한 기류와 한랭한 기류의 경계에 생기는 것으로 불연속선 혹은 전선을 갖고 있는 것이 태풍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온난전선 상에서는 바람은 강하지 않으나 지속성 강우가 장기간 내리므로 저기압이 정체하게 되면 온난전선의 강우구역 내에 있는 지역에서 많은 비가 내린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형태의 강우로는 홍수현상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하천이 범람할 위험성은 별로 많지 않다.

이와 반대로 한랭전선의 전방이나 전선이 통과하는 지점에는 격렬한 기상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한랭전선은 저기압의 후면에 나타나서 따뜻한 기류를 위로 밀어 올려 불안정한 기층을 형성하기 때문에 곳곳에서 뇌우와 돌풍을 일으키는 일이 흔히 있다. 뇌우는 비교적 짧은 시간에 억수같은 비를 퍼부어 수원지역으로부터 하천으로 유입되는 유출량을 증가시켜 종종 홍수를 일으킨다. 또한 급류로 인해 둑이 무너져 수해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해상에서는 어선들이 한랭전선 전방에서 일어나는 돌풍과 같은 급격한 기상변화로 인하여 조난을 당하기도 한다.

④ 장마

장마는 초여름에 나타나는 우기현상으로 강우량에 있어서 장마기에 내리는 강우량은 연 총 강수량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 장마기에는 구름이 증가하고 따라서 일조지수는 감소하

며 습도와 강우량이 증가하여 지속적인 악천후가 나타난다. 장마전선은 북태평양 기단과 오호츠크해 기단 사이에 동서로 형성되는 불연속선으로 우리나라 여름철의 강우량을 좌우하는 요인이 되지만 출현시기, 지속시간, 진행경로, 종료 등이 태평양 기단이나 대기순환 등 여러 가지 기상 및 기후학적 인자에 의해 지배를 받는다. 따라서 어느 지방에 얼마나 많은 비가 내릴지는 단순히 이 불연속선의 활동상황만으로는 판단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예상치 못했던 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장마전선은 6월 중순경에 우리나라 남해안지방에 걸치기 시작하여 북태평양 고기압의 발달과 더불어 북상하여 7월 중순경에는 북위 36° 부근에, 하순경에는 한만국경까지 이르게 되어 장마가 끝나게 된다. 장마전선이 우리나라까지 북상하지 못하면 한발을 초래하기도 하나 일단 이 전선 아래에 놓이게 되면 습기를 많이 품고 있는 열대 기단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오게 된다. 오랫동안 비가 내리는 경우 하천의 범람 및 산사태 등과 같은 피해를 일으키기도 한다. 장마전선은 대략 30일 정도이며 강우량 분포는 0.2~10.0mm 강우일이 가장 많다.

평균강우량을 보면 보성, 고흥을 중심으로 한 서부남해안지방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제주도 북부 해안지방, 강릉을 중심으로 한 중부 동해안지방의 순이며 가장 적은 곳은 중부 내륙지방과 울릉도 지방이다.



⑤ 한발

우리나라 수자원 부존량의 연간 편차는 매우 크나 지역별 연간 분포는 균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계절적 변동이 심하다. 연간 유출량 697억 m^3 에서 약 67%인 467억 m^3 가 홍수기인 5월에서 9월에 집중되며 5대강을 제외한 대부분의 중소하천은 경사가 급하고 유로 길이가 짧아 직접 바다로 유출된다. 우리나라 지하수 부존량은 1조 3,240억 m^3 로 연평균 총 강수량의 약 10배, 하천 유출량의 약 19배로 추정되고 있으나 대규모 지하수층의 발달이 빈약하여 지하수 개발은 불리하나 물 부족시에 중소규모 지하수 개발로 대처할 수 있는 정도의 양은 충분하다.

이러한 수자원 공급량이 실제 수요량보다 부족하게 되면 한발현상이 발생한다. 북태평양 기단과 오호츠크해 기단의 이상 발달이 있게 되면 장마전선이 우리나라에 형성되지 못하므로 대륙지방으로부터 이동해 오는 저기압의 진로를 가로막을 뿐 아니

라 동서 계절풍의 발달이 억제되어 가뭄이 일어나게 된다. 고대에서 근대까지 농업이 주산업으로 용수수요가 적었던 시대에는 한발로 인한 수확량 감소로 기근을 겪었다. 근대에서 현대로 이르면서 인구증가, 도시화 및 산업화 등에 따라 용수수요가 증가하였지만 다목적댐의 건설 등 발달된 수자원 관리로 한발의 피해는 과거에 비해 크게 줄어들게 되었다.

190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 막대한 피해를 준 한발로는 1939, 1968, 1978, 그리고 1982년도 발생한 한발과 1994년의 한발을 들 수가 있다. 1939년도의 한발은 낙동강 유역에서 가장 심한 물 부족을 보였고 영산강에서는 지표수가 고갈되었다. 1978년의 한발은 영산강 유역 및 서남 해안지방과 낙동강 유역에서 극심하였으며 영천 및 밀양지방에서는 농업용수뿐만 아니라 공업용수까지 큰 위협을 받았다. 1982년의 한발은 충청 이남, 경남북지방에서 극심하였으며 낙동강은 본류를 제외하고 모든 지류가 고갈상태였다. 1994년의 경우 북태평양 기단이 우리나라를 강하게 덮게 되어 전선이 형성되지 못하여 저기압이 우리나라에 접근할 수 없었기 때문에 유례없는 극심한 한발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전국적인 생·공용수공급 및 농작물에 극심한 피해를 주었으며 하천유지 용수의 부족 등으로 식수원이 오염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나 사회·경제적 요인

우리나라 자연재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풍수해 및 한발이 연중 반복되어 인명과 재산상의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고 있는데 기후, 지형 및 지질 등과 같은 수문 기상학적 및 지형학적 요인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사회 경제적인 발전과 변화로 인한 또 다른 재해를 무시할 수 없다.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고도의 경제성장 및 인구증가에 따른 도시화와 공업화로 인하여 도시 근교의 구릉이나 계곡이 개발되고 전답이 매립되어 택지 또는 상공업지역이 되는 등 도시화가 급진전되었다. 최근에 들어 미개수 하천 주변 저지대에 주택, 공장 등 시설물이 집중되고 무질서하게 산지가 개발되는 등 인위적인 현상에 의한 홍수의 피해가 점차 대형화되고 있다.

도시화된 유역은 농촌지역이나 임야지역과 같은 자연녹지에 비교하면 인구가 조밀하고 주택, 상가 또는 공공시설물이 밀집되어 있으며 배수시설이 잘 정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가 포장되어 있는 지역이 많다. 즉, 도시화는 인구의 증가와 불투수 표면으로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를 비롯한 각종 소비수량을 증대시킴과 아울러 기후의 변화, 불투수성 지역의 증대, 표면 조도계수의 감소, 자연의 수분 함유 능력의 감소 등과 같은 수문현상의 변화를 초래한다. 이러한 현상에 의해 호우시 유출량과 유출속도를 증가시켜 피해를 가속화시킨다.

● 재해발생 추이

우리나라의 자연재해는 유사 이래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의 발생도 오늘날까지 되풀이되고 있다. 삼국시대부터 재난이 계속되어 이에 대처한 노력의 기록을 후세에 남기고 있는데 유사 이래의 재난을 살펴보면 인위적 재난에 대한 기록은 별로 눈에 띄지 않고 자연적 재해에 대한 기록은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되고 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삼국시대(신라, 고구려, 백제) 자연재해의 대표적인 재해원인은 한해, 수해, 질병, 풍해, 냉해, 지진, 낙뢰, 우박, 상해(霜害), 설해 등이 기록되고 있으며 그 후의 기록도 자연재해의 원인이 바뀐 점은 별로 찾아볼 수가 없다. 삼국시대의 자연재해를 기상재해와 지진재해 및 동물재해 등으로 원인별 재해 빈도를 살펴보면 한해, 수해, 풍해, 낙뢰, 우박, 상해, 설해 등의 기상재해가 전체 재해의 47%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진재해가 17%, 동물재해가 10% 등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삼국시대의 재해 가운데 자연재해로 인한 재난이 전체 재해의 74%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 나라에서 발생하는 자연재해의 비중을 짐작케 하고 있다.

근래에 와서는 국지적인 집중호우, 태풍, 해일 등 이상기후 현상에 의한 자연재해가 대중을 이루고 있는 것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해가 갈수록 그 양상이 다양화되고 있다. 또한 급격한 도시팽창 및 각종 산업시설의 단지화와 유수지 등의 상대적 감소는 유출량의 증가를 가져와 피해도 점차 대형화되어 가는 추세에 있다.

가_ 재해원인별

고대로부터 재해별 피해액을 정확히 산출한 근거는 없지만 한번의 재해로 인명과 재산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수해가 으뜸이고 그 다음이 농작물에 가장 큰 피해를 주는 한해, 풍해 순이다. 삼국시대 재해기록 중 수해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기록은 신라 589년(진평왕 12년) 7월에 있었던 홍수로 당시 유실된 가옥만
도 30,360호나 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또한 재해의 정도는 가뭄이나 수해로 인한 기근이 발
생하여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기도 했고, 아들딸을 팔러 다니는 자녀매매 시장도 형성된 적
이 있으며 기근으로 나라를 버리고 해외로 살길을 찾아 나간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오늘
날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했던 것 같다.

최근의 재해발생 상황을 원인별 발생빈도를 보면 호우로 인한 피해 약 35%, 폭풍으로
인한 피해는 약 33%로 2가지 요인으로 인한 피해가 전체 피해의 68%를 차지하고 있다. 재
해원인별 인명피해는 호우로 인한 인명피해가 약 46%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태풍 27%, 폭
풍 18%, 폭풍설 3%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해원인별 재산피해는 호우로 인한 피해가 약
59%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28%로 태풍이 차지한 반면 폭풍은 6%로 발생빈도는 높으나
재산피해는 상대적으로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나_연대별(금액은 1997년 환산금액)

1916~1998년 기간 중 총 피해액은 118,496억원이고 연평균 피해액은 1,823억원으로 집계되
었으며 이를 연대별로 보면 1980년대의 연평균 피해액이 3,789억원으로 가장 높고, 1910년
대가 285억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16년부터 1998년 83년간 발생한 우
리나라 재해의 양상을 연대별로 보면 다음과 같은 특색을 찾아 볼 수 있다.

① 1960년대 이전(1916~1959년)

이 기간 동안은 근대적인 재해대책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기로서 재해상황 기록이 누락된 연
도도 있다. 이 시기 중 재해로 인하여 가장 피해가 극심하였던 연도는 1936년도로 총 피해액



은 2,812억원이었고, 인명피해는 1,916명에 달하였으며, 가장 작은 피해를 입은 해는 1939년으로 피해액은 1억 4천만원 이었다.

② 1960년대

1960년대에는 재해피해 중 농작물 및 농경지 피해가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즉 재산피해 중 농경지 및 농작물피해가 4,860억원으로 전체 피해의 56%, 공공시설 피해액은 2,489억원으로 29%이다. 이러한 현상은 당시의 국민경제가 제1차 산업인 농업에 기초를 두고 있었으며, 정부재정의 빈약성으로 공공시설이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이다.

③ 1970년대

1970년대는 60년대부터 시작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추진에 따라 산업시설이 증가하고 공공시설에 대한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풍수해에 의한 피해도 1960년대와는 달리 농경지



및 농작물 피해는 소폭 증가한 반면 공공시설의 피해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1970년대에는 농경지 및 농작물 피해가 5,997억원으로 42%로 60년대에 비하여 다소 증가한 반면 공공시설 피해는 4,831억원으로 34%로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④ 1980년대

83년간(1916~1998) 연도별 피해액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80년대의 5개년도(1980년, 1984년, 1986년, 1987년, 1989년)가 상위 10위권 안에 포함될 정도로 풍수해로 인하여 극심한 피해를 입은 연대이다. 특히 1987년도에는 7월 15~17일의 태풍 셀마로부터 8월 30~31일 태풍

다이너에 이르기까지 7, 8월 두 달 동안에 두 차례의 태풍과 여덟 차례의 호우, 모두 열 차례의 풍수해가 발생하였는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전국에 걸쳐 인명피해 1,022명, 재산 피해액은 14,307억원에 달하였다.

⑤ 1990년대

1990년대는 '재해는 있어도 인명피해는 없다'는 기초하에 기상특보에 따라 예방적, 계획적 대피체제의 확립, 행정관리 범위 내의 시설 및 지역의 사전조치 강화 등을 실시토록 하는 신재해 대책의 도입 및 인명피해를 획기적으로 경감하기 위하여 피해발생 원인에 따른 대피계획을 사전에 수립, 기상정보 초기단계에서부터 재해피해 우려지역 주민을 대피토록 하는 '사전계획대피제' 등 정부에서 꾸준히 추진해 온 각종 재해예방 대책의 영향으로 인명피해가 크게 감소되었다.

다_종류별

1916~1998년간 종별 피해상황을 살펴보면 공공시설 피해가 전체 피해액의 39%, 농작물의 피해가 27%로 이들 두 경우가 66%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연대별로 보면 1910, 1920년대에는 건물피해가 전체 피해액의 33.9%, 39.3%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이후에는 10%미만 수준으로 낮아졌다. 공공시설 피해에 있어서는 1950년대 이전까지는 20% 미만 수준에서 1970, 1980, 1990년대에 와서는 각각 68.4%, 45%, 58.5%로 구성비가 높아져 종별 피해양상이 달라졌다.

라_인명피해

인명피해는 60년대 연평균 인명피해가 265명, 70년대 330명에서 80년대 285명, 90년대 148명으로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에 있으며 이는 인명피해 경감을 위하여 분야별로 취약요소를 분석한 후 적극적인 대처와 능동적인 구조활동을 전개한 결과로 분석된다. 그러나 방재 선진국인 일본과 비교하여 볼 때 인구 백만명당 일본은 2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7명으로 3.5배에 이르고 있어 앞으로 인명피해 경감대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1916~1998년까지 83년간 인명피해는 총 17,535명으로, 연평균 27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마_수계별

1980년부터 1998년까지 수계별 재산피해 발생상황을 살펴보면 한강 수계에서 인명 567명(16%), 이재민 603,741명(50%), 건물 191억원(26%), 공공시설 5,896억원(24%) 피해가, 낙동강 수계에서는 침수면적 287,542ha(21%), 선박 502억원(7%), 농작물 3,564억원(29%)으로 농작물 피해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농경지 피해는 891억원(28%)으로 금강 수계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5 | 2003년 재해구호지침

● 개요

가_재해의 정의 : '재해'는 태풍·홍수·호우·폭풍·해일·폭설·가뭄 또는 지진(지진해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나_구호 목적 :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피해자에 대한 구호를 실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와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다_구호 대상

① 중앙지원 대상

-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의한 기준.

- 동일한 재해기간에 발생한 피해액(농작물 및 동산의 피해액을 제외)이 다음 기준금액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특별시의 구 : 20억원

*광역시의 구 또는 인구 30만 이상의 시·군 : 11억원

*인구 30만 미만의 시·군 : 7억원

- 특별재해지역은 재해피해가 특별재해지역선정기준(행정 자치부훈령, 전국 : 1조5천억원, 시·도 : 5천억원, 시·군·구 : 1천억원, 읍·면·동 : 2백억원)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통령이 선포.

- 특별재해시 지방자치단체나 개인의 부담 분을 국고 부 담으로 전환하고, 특별위로금을 추가 지원.

② 중앙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수립하는 재해구호계획에 중앙지원대상이 아닌 소규모 재해에 대한 처리방안을 반영하고, 재해발생시 동 계획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실시하되, 재해구호기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라_구호계획 및 구호체계

① 계획수립: 4월말까지

- 시·도지사는 최근의 재해발생상황 등을 종합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는 재해구호기본계획을 수립.

-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도 재해구호기본계획에 따라 시·군·구 재해구호세부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5월말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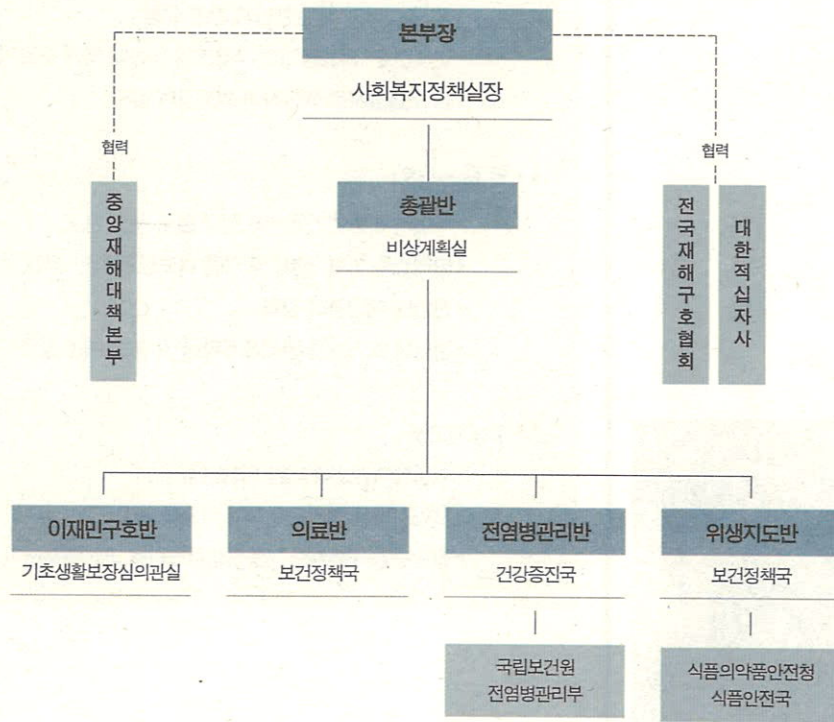
- 재해구호계획 주요내용

- *재해구호 조직 및 운영체계에 관한 사항
- *재해구호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 *응급구호·의료·전염병관리 및 위생 등 재해구호에 관한사항
- *재해구호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시설·물자 등의 조달 및 비축·수송에 관한 사항
- *재해구호물품 적정량 비축·확보 및 장기보관물품 처리계획
- *기타 재해구호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재해구호기구 설치

-중앙 : 재해구호본부(보건복지부)

| 조직 |



● 각반은 해당국장이 반장(위생지도반의 경우 약무식품정책과장)이 되며 각반별로 3·4급 1명, 5급 1명, 6급이하 1명 등 3명으로 구성되며 24시간 교대 근무.

다만, 위생지도반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자체 상황실을 운영하고, 중앙재해구호본부에 6·7급 1명 파견하여 약무식품정책과와 합동으로 근무.

재해구호본부 임무

- ● 본부장 : 구호활동본부 업무총괄 및 지휘·통제
- ● 종합구호반
 - 사상자, 이재민, 침수주택 등 재해상황 파악
 - 재해구호물품지원 및 부족 물자 조정·점검
 - 대한적십자사의 구호반 투입, 자원봉사자, 군부대 인력지원 요청
 -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수재의연금 신속모금 지원 및 모금·배분현황 파악
- ● 의료반
 - 보건소를 통하여 수해지역 환자 발생 모니터링 실시
 - 시·도권역응급의료센터 및 보건소를 중심으로 진료활동 실시
 -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에 대하여 의료지원 요청
 - 국·공립기관 및 관련단체 협조 요청
 - 이재민을 「의료급여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구호기간동안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로 책정하여 의료급여 실시
- ● 전염병관리반
 - 수해지역 방역기동반의 증강 편성·운영 지도
 - 방역소독 인력, 장비 및 약품 확보상황 확인·점검
 - 전염병 예방관리 강화
 - 전염병 조기발견 관리체계확립 및 홍보·계몽 강화
- ● 위생지도반
 -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위생점검
 - 재해지역을 정기순회하여 식중독 예방
 - 집단수용시설에는 식품위생감시원을 고정배치하여 급식관리



-지방자치단체

*지방재해구호본부 조직 및 운영.

_____ 시·도 : 시·도재해구호본부

_____ 시·군 및 구 : 시·군·구재해구호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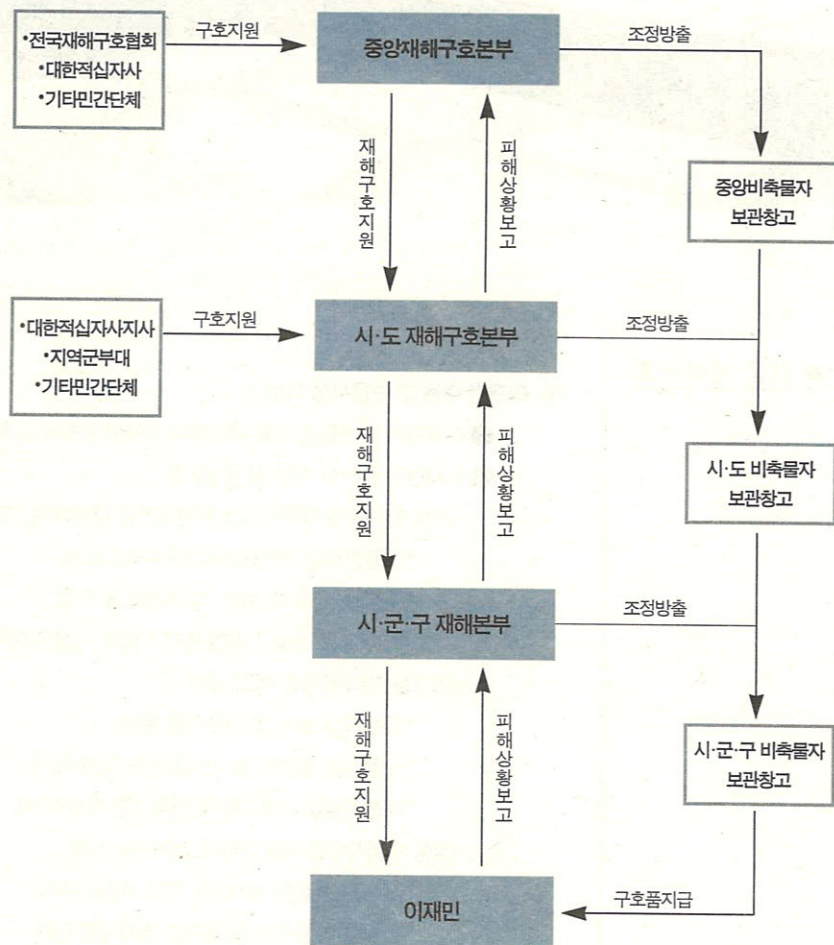
_____ 재해 발생시 비상근무체제로 즉시 전환토록 체제확립

*각 재해구호본부에는 본부장 1인 및 간사 1인과 본부원 약간 인을 두고, 본부장은 사회복지관련 국장이 되며, 간사는 사회복지업무 총괄과장이 됨.

*현장 구호활동은 대한적십자사 요원을 적극 활용하고 그에 소요되는 경비는 대한적십자사와 협의하여 처리하되 필요시에는 시·도보유 재해구호기금에서 지급.



| 재해구호활동 운영체계 |





● 긴급 재해구호

가_ 이재민 수용 및 수용시설 확보

- ① 이재민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이재민 수용시설 확보.
- ② 이재민 수용시설 지정 및 운영기준.
 - 피해 이재민의 거주지역과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지정
 - * 수용면적은 1인 1평이상을 원칙으로 함.
 - * 공공건물, 교회, 회관, 학교강당 등 지정.
 - * 저지대 등 상습 재해발생지역 내의 시설은 이재민 수용 시설로 지정하지 아니함.
 - 화장실, 간이목욕실 확보·설치
 - * 급수시설 설치 및 급수차량 운영.
 - * 수용시설 평면도 및 안내표시도 작성·게시.
 - * 지정시설별 구호대상자 인적사항 작성·비치.
 - 월동시 임시수용시설 운영에 있어 유의사항
 - * 24시간 적절한 실내온도(17도 이상) 유지.
 - * 적절한 통풍유지 및 철저한 화재예방 완비.



●● 임시 주택복구시설(컨테이너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련 부서에 협조하여 다음 사항이 고려될 수 있도록 함.

- 화물용 컨테이너를 주거용으로 개조하지 말것.
- 벽면, 천장 및 바닥을 단열 및 보온 처리.
- 전기시설 및 세면시설 설치.
- 적절한 실내온도, 통풍 유지 및 화재예방 완비.
- 표준모델 수립.

③ 시·도는 관할 시·군·구별 이재민 수용시설간에 편리성 등에서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여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이재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주의.

나_ 생필품 제공

① 시·도에서는 재해구호기금으로 시·도의 재해구호계획에 따라 적정 구호물품을 비축하고, 재해 발생시에는 보유하고 있는 구호물품을 우선 제공하며, 부족분은 대한적십자사 및 전국재해구호협회로부터 협조 받아 지원.

- 생필품 지원시 대한적십자사 및 전국재해구호협회 등에서 지원되는 품목과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하여야 함.

② 급식도 시·도 자체의 예산이나 재해구호기금으로 우선 시행하고, 부족 분은 대한적십자사 (또는 자원봉사자) 등의 협조 받아 실시.

다_ 응급생계구호비 지급

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응급생계구호비를 재해구호기금을 통하여 집행하되, 재해상황 및 이재민의 형편 등을 고려하여 신속한 구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좌를 통해서 또는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고, 필요시에는 해당 금액에 상당하는 급식 또는 구호물품으로 지급 할 수 있음.

② 응급생계구호비는 재해발생초기 7일간 1인당 1일 급식 및 부식을 이재민에게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해당 구호비를 지급하는 경우 이재민이 입은 피해규모가 크다고 하여 중복 지급하지 말것.

③ 응급생계구호비 지급대상 및 조치사항.

- 주택의 전파·반파·침수 등으로 주택사용이 불가능하여 이웃민가나 공공시설 등에 수용된 이재민

- 기타 응급생계구호를 위한 제반 사항

*수용시설 확보(임시주거시설 설치포함), 식량, 의류, 침구, 취사·난방 도구, 연료, 의약품 등 기초생활 필수품의 제공.

*대한적십자사 및 전국재해구호협회 등 구호관련 단체와 협조.

●● 응급생계구호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고시할 예정.
현금 지급시 반드시 수령증 첨부.



라 _ 전염병관리, 의료구호 및 식품위생관리

① 방역활동

- 폭우 및 침수지역은 주 2회 이상 방역소독 실시.
- 예방약품 및 방역소독약품 부족시 긴급지원 요청.
 - * 시·군·구 및 시·도는 지역실정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물량을 확보.
 - * 시·군·구는 약품이 부족한 경우 시·도에 지원을 요청할수 있으며, 지원요청을 받은 시·도는 그 지원요청에 대한 조치를 충분히 할 수 없는 경우 보건복지부에 그 지원을 요청.
- 재해지역의 하수구, 화장실, 쓰레기장 등의 해충 서식처나 발생원에는 정기적으로 살충·살균소독 실시.
- 고열 또는 설사환자 발생 즉시 보건기관에 신고.

② 의료구호

- 사상자 구조 및 응급처리를 위하여 119구급대와 구급차를 신속히 현장에 투입.
- 사상자 규모 등을 감안하여 현장응급진료소를 설치.
- 기동의료반을 편성하여 재해 발생지역에 상주 또는 순회 진료하게 하고 부상자는 응급치료 또는 후송조치.
- 응급의료기관은 각 지역별, 권역별 응급의료센터를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를 갖추도록 조치.
- 보건소 및 보건지소 등에 비상대기조를 편성·운영.
- 이재민은 의료급여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구호기간동안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로 책정하여 의료급여를 실시.
- 이재민 공동수용소에서 환자발생 즉시 진료를 받을 수있도록 대처.

③ 식품위생 관리

- 식품접객업소
 - * 날음식 및 부패·변질 우려가 있는 식품은 판매금지.
 - * 무표시, 무허가 식품은 사용금지.
 - * 급수는 수도물을 사용하고 식수는 끓여서 제공하되, 지하수를 활용하는 경우는 수질검사를 반드시 실시후 급수 실시.
- 집단급식소 및 이재민 수용소
 - * 수해지역에는 식품위생감시원이 정기 순회하여 식중독 예방.
 - * 집단 수용시설에는 식품위생감시원을 배치하여 급식상태 관리.
 - * 식수는 끓여서 제공하고, 급수원은 잔류염소 0.4ppm 이상 유지.
 - * 오염된 식기류, 도마 등은 반드시 소독하거나 햇볕에 건조한 후 사용.

● 이재민 구호 및
복구지원 내용

가_ 시·도 재해구호기금 우선활용

- ① 중앙지원대상인 경우도 위로금, 생계보조금, 응급·장기생계구호비, 세입주자보조비 및 침수주택수리비 등은 시·도 재해구호기금으로 우선 조치하고, 사후에 국고 또는 재해 의연금으로 정산.
- ② 인위재난의 경우에도 인명과 재산의 피해정도가 매우 커서 재난관리법 제50조 규정에 의거 대통령이 그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경우, 당해 재난으로 인한 이재민의 효과적인 구호를 위하여 시·도 재해구호기금으로 우선 지원할 수 있으며, 사후에 국고 또는 배상금 등으로 정산.
- ③ 중앙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재해구호기금으로 이재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기준 및 배분절차 등을 시·도 조례 또는 시·도지사 규칙으로 마련하고 재해시 동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신속히 구호.

나_ 지원기준(중앙지원대상인 경우)

① 사망·실종자의 유족 및 부상자 위로금

- 위로금(장의비 포함)

*재해로 인한 사망·실종자의 유족 및 부상자에게는 시·도 보유 재해구호기금에서 즉시 지급하여야 함.

*사망 또는 실종자가 세대주인 경우 : 1,000만원

*사망 또는 실종자가 세대원인 경우 : 500만원

*부상자는 사망·실종자 위로금의 50퍼센트 지급

- 생계보조금

*재해로 인하여 기구의 주 수입원이었던 자가 사망·실종 또는 부상을 당함으로써 그 유족 및 부상자의 생계유지가 곤란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특례수급권자도 포함)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세대당 500만원 지원.

위로금 및 생계보조금 지급시 유의사항

- 위로금은 사망·실종자 및 부상자의 주민등록 거주지 관할 시·도지사가 지급
- 부상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애등급 7급 이상에 해당될 경우에 한함.
- 재해로 인한 사망·실종자의 유족은 호적이나 주민등록표상 직계존비속배우자 및 친족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에 한함.
- 세대주는 성별·연령·주민등록에 관계없이 세대원의 생계를 직접 책임지고 있는 자를 말함. 다만,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자가 불투명한 경우는 호적상의 호주 또는 주민등록상의 세대주를 말함.
- 단독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사망하여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이 없는 경우는 실제 장례를 치를 사람에게 구당 50만원의 장례비 지급.



② 이재민 장기생계구호

-재해로 인하여 생활유지 수단이나 근거를 상실하여 장기 생계구호가 필요한 이재민에게는 1개월 내지 6개월(응급 구호기간 7일을 포함)의 범위내에서 구호를 실시.

-지급기준

- *주택반파 : 23일간 구호비(7일간 응급구호비 공제)
- *주택전파 : 53일간 구호비(7일간 응급구호비 공제)
- *10톤미만 어선의 전파(선주 및 이에 소속된 선원) : 60일간 구호비
- *10톤미만 어선의 반파(선주 및 이에 소속된 선원) : 30일간 구호비
- *농경지 3~5ha미만 80%이상 피해 : 30일간 구호비
- *농경지 2~3ha미만 80%이상 피해 : 60일간 구호비
- *농경지 2ha미만 80%이상 피해 : 90일간 구호비
- *기타 : 90일간 구호비

● 대규모 재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구호기간을 각각 2배로 연장.

-적용 제외대상

- *재해지역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택소유자
- *재해지역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전·월세입자
- *침수주택

● 장기생계구호비 또한 1인당 1일 급식 및 부식을 이재민에게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해당 구호비를 지급하는 경우 이재민이 입은 피해규모가 크다고 하여 중복 지급하지 않음.

③ 재해복구지원

- 세입주자보조비

*전세 또는 월세 입주자의 주거용 건물이 파손·유실되어 이사를 하여야 할 경우 300만원 이내의 입주보증금 또는 6월간 임대료를 지원.

*장기생계구호비를 지급 받은 경우에는 이사하는 날까지의 장기생계구호비를 정산하여 추가로 지급된 장기생계 구호비는 이를 공제하고, 또한 세입주자보조비에서 기지급한 장기구호비를 공제하고 지원.

- 침수주택수리비

*주택 및 주거를 겸한 건축물의 주거용 방이 방바닥이상 침수되어 수리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세대 당 60만원 지원.

*침수주택수리비는 세입주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주택소유자가 침수주택을 복구하였을 경우에는 소모된 경비를 세입주자와 상호 정산토록 함.

위로금 및 생계보조금 지급시 유의사항

●● 재침수의 경우

- 침수된 주택이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침수된 경우에는 침수주택수리비를 1회만 지급하고,
- 침수된 주택이 수리가 이루어진 다음에 재침수된 경우에는「침수주택수리비」를 다시 지급.
- 다만, 위로금(특별위로금 포함. 이하 같음)은 1회만 지급.

●● 침수주택소유자(또는 임대인)가 주택수리를 하였으나 세입주자가 정산하지 않고 이사한 경우 또는 세입주자가 수리비를 수령하고도 주택수리 없이 이사한 경우

- 해당 이해관계자인 소유자와 세입주자가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 부득이한 경우, 세입주자가 소유자와 수리비를 정산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로금을 세입주자에게 지급하거나, 소유자가 주택 수리한 비용을 세입주자에게 지급할 위로금에서 정산하여 소유자에게 지급하고 잔액분은 세입주자에게 지급.

●● 침수주택이 주택건축을 신청하여 주택전파로 복구계획서에 계상되는 경우

- 기 지급된 침수주택수리비 환수(동일 대상에 대한 주택복구비 중복지원 금지).
- 기 지급된 위로금 환수(장기구호세대의 대상이 되지 않는 피해 세대에 대한 과도한 지원 방지).

●● 군 관사(영외아파트 포함)의 침수주택수리비 지급여부

- 중앙재해대책본부의 「자연재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에 의하면 군 관사는 주거용이라 하더라도 공공건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수리비 지급대상에서 제외.

●● 주거용방이 없는 소상공인 점포는 주거를 겸한 건물이 아니므로 지급대상에서 제외.

● 의연금품 모집
·관리 및 지급

가. 의연금품 모집 및 관리

① 개요

- 대규모의 재해 발생시에는 전국재해구호협회가 소정의절차를 거쳐 의연금품 모집을 주관함.
- 시·도지사는 시·군·구에 접수된 의연금품이 전국재해구호협회에서 허가받은 기부금품 모집에 해당하는 것은 즉시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이관하거나 협의하여 처리해야 함.

② 의연금품 접수업무

- 각 시·군·구는 의연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으로 정한 수령증 교부.
- 의연금품 접수처리에 애로가 있는 시·군·구는 관할 시·도에 지원을 요청하고, 요청 받은 시·도는 관할지역 중 피해를 입지 않은 시·군·구의 인력을 지원하는 등 적극협조.
- 각 시·군·구는 의연금품 접수시 재해구호에 불필요한 물품은 접수하지 않도록 하고, 대한적십자 또는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언론기관 등에 재해구호와 상관없는 불필요한 물품은 기탁하지 않도록 홍보 요청하거나 홈페이지 게재.
- 각 시·군·구는 피해규모가 크고 인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의연금품 운송 등 행정기관의 보조 업무에 자원봉사자 활용.

나. 의연금 지급기준

- 일반재해지역 : 법정구호비(의연금 또는 국고) 및 위로금(의연금)
- 특별재해지역 : 법정구호비, 위로금 및 특별위로금(의연금 또는 국고)

| 국고 및 의연금 지급기준 |

구분		법정구호비		위로금 (의연금)	특별 위로금	계
		금액	재원			
사망·실종자 (1인)	세대주	1,000	의연금또는 국고 100%	1,000	-	2,000
	세대원	500		1,000	-	1,500
부상자 (1인)	세대주	500	의연금또는 국고 100%	500	-	1,000
	세대원	250		500	-	750
주택파손 (세대)	전파	-		380	120	500
	반파	-		230	60	290
침수주택수리비(세대)		60	국고 100%	60	80	200
세입자보조(세대)		300	국고 80%, 지방비 20%	-	-	300
생계보조(세대)		500	국고 50%, 의연금또는 국고 50%	-	-	500
농·어가 이재민 (세대)	80%이상 피해	150	농림부 국고 70% 의연금또는 국고 30%	80	270	500
	50-80% 피해	90		-	210	300
생계구호비 (1인/1일)	장기생계구호비	4,000원	국고 70%, 지방비 15% 의연금또는 국고 15% 시·도 재해구호기금			
	응급생계구호비	4,000원				
연료비(1세대/1일)		2,000원		2,000원	주택파손, 농작물 80% 이상 피해농가에 한함	

● 단위: 만원

의연금 지급시 유의사항

- 의연금 지급시 반드시『국민성금』임을 표시할 것.
- 주택파손 세대에 대한 위로금 지급.

전파(반파) 주택에 소유자와 세입자가 함께 거주한 경우

- 소유자 : 위로금 300만원(반파는 150만원), 특별위로금 120만원(반파는 60만원), 월동대책비 30만원, 명절위로금 50만원, 연료비 1일 2,000원 지급.
- 세입자 : 월동대책비 30만원, 명절위로금 50만원, 연료비 1일 2,000원, 移轉時 세입주자 보조금(300만원 이내) 지급.

전파(반파) 주택에 세입자만 거주한 경우

- 소유자 : 위로금 300만원(반파는 150만원), 특별위로금 120만원(반파는 60만원) 지급.
- 세입자 : 월동대책비 30만원, 명절위로금 50만원, 연료비 1일 2,000원, 移轉時 세입주자 보조금(300만원 이내) 지급.

- 장기구호세대에 지급하는 위로금(연료비, 월동비, 명절위로금) 중복지급 제한.
- 주택과 농지를 동시에 피해 본 장기구호세대의 경우에도 장기구호세대에 대한 위로금(연료비, 월동비, 명절위로금)은 한 번만 지급.

다. 의연품 처리

- ① 각 지방자치단체는 사용연한에 이른 의연품 또는 재해구호와 관련 없는 의연품을 기탁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기부 받은 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
- ② 예를 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얻어 다른 재해지역의 자치단체나 불우이웃을 수용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기부 하는 것이 가능.

● 재해구호물자 비축 및 관리

가. 적용대상

- ① 보건복지부에서 취득하여 시·도에 배정하거나, 예산을 보조하여 시·도에서 취득한 재해구호물자
- ② 시·도에서 재해구호기금 등으로 자체확보한 재해구호물자
- ③ 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구호협회 등에 기탁된 재해구호물자

나. 재해구호물자 확보 및 비축

- ① 시·도지사는 시·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해구호기금 등으로 최근 10년간의 시·군·구별 재해발생현황, 물자지원실적 및 지역실정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물량을 상시 확보하거나 즉시 조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② 재해구호물자 비축시에는 소모물자별 비축량, 비축기간 등 비축 기준을 설정하되 생활필수품은 응급용, 재가용 등으로 세트화 하여 보관토록 함.
- ③ 시·도는 담당 인력 및 재해구호물자 보관상황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자체적으로 재해구호물자를 확보·세트화 하는 것보다 민간전문구호기관인 전국재해구호협회 등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인 때에는 동 협회 등으로 하여금 재해구호물자를 확보·세트화 하도록 위탁할 수 있음.



다. 보관창고 설치 및 물자의 보관

① 시·도지사는 최근 10년간의 구호실적을 감안하여 교통, 재해 상습지역 등을 고려한 재해구호물품창고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다만, 시·도지사는 시·도의 재해구호물자 비축창고가 협소한 경우에는 시·군 및 구의 재해구호물자 비축창고를 사용하거나 민간재해구호관련 단체의 재해구호물자 비축창고를 임차할 수 있음.

② 광역 재해구호창고건립현황

권역	지역	면적	추진기관	추진내역	비고
영·호남권	경남 함양	19,030평	재해구호협회	대체부지조성공사 및 감정평가 완료	03년 원공예정
수도권	경기 파주	10,000평	재해구호협회	부지매입	03년 원공예정
중부권	충남 논산	10,000평			건립여부 검토중

③ 재해구호물자관리는 “재해구호물자관리권의위임및관리요령(복지부훈령 제5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

- 동 관리요령에 의거하여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재해구호 물자의 입·출고 및 보관 재해구호 물자의 망실, 훼손, 보관 상태 등 점검.

라. 재해구호물자의 사용

① 재해구호물자의 적절한 배분을 위해 시·도지사는 평시에 재해구호물자의 효과적인 수급계획을 마련.

- ② 시·도지사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 수급계획에 따라 보관중인 재해구호물자로 이재민 구호 실시.
- ③ 시·도지사는 재해구호물자에 대해 부족 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현황을 대한적십자사 및 전국재해구호협회 등에 통보하여 지원 요청하거나 업체에서 구매하여 조달.
- ④ 재해발생지역에 소재하는 창고의 보관물자가 부족하거나 수송이 곤란한 경우에는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재해구호물자를 상호 협의하여 사용.
- ⑤ 재해구호물자중 사용연한에 이르러 다음 재해 발생시까지 비축할 경우 폐기될 우려가 있거나 활용도가 떨어지는 물품은 재해가 발생한 타 시·도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거나 매각 후 그 대금을 재해구호기금으로 편입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불용 처분하고 새로운 물품으로 대체하여야 함.

마. 의약품 확보 등

① 의약품 지원

- 의약품은 개별적으로 진료 받은 후 구입하는 것이어서 불특정 다수의 이재민을 위한 구호 물품과 다르나 대규모 재해발생시 안약·피부연고제·소독약 등 응급 구호약품이 부족한 경우가 있음.
- 관할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에 응급구호 약품이 충분히 비축되어 있는지를 점검하고 재해시 부족분이 발생한 경우 대한제약협회 등에 협조요청.

② 고립지역에 대한 지원

- 재해시 일부 지역이 고립될 수 있으므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사전에 헬리콥터를 동원할 수 있는 기관(예를 들면 군부대, 산림청 등)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하여 고립 지역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재해구호기금 관리

가. 재해구호기금의 적립

- ① 시·도지사는 재해구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구호기금을 적립하여야 함.
- ②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전 3년간에 있어서의 지방세법에 규정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서울특별시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 다만, 재해구호기금의 누적집행잔액이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최저적립액 이하로 적립할 수 있음.

나. 기금의 관리·운영

① 관리

-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하되, 기금의 관리기관은 특별한 사유 없는 한 업무주관국으로 함.
- 재해구호기금 적립계좌를 별도로 설정하고 재해구호기금을 적립.

② 관리공무원 임용

- 시·도지사는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업무를 집행하기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③ 회계관리직업 등의 책임

- 회계관리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법률 중 재무관과 세입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지출관과 출납공무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에게 준용함.

다. 기금의 용도

- 재해구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정한 구호에 필요한 경비로서 구체적인 용도는 다음과 같음.

*재해구호물자의 구입 및 보관창고의 설치·운영.

*이재민에 대한 응급구호.

*재해구호협력자에 대한 보상금.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재해복구비용등에 대한 부담기준 중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사전 집행. 이 경우 국가 등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은 동표의 부담율에 따라 사후에 정산.

_____ 사망자의 유족, 실종자의 가족 및 부상자에 대한 위로금 및 생계보조

_____ 이재민에 대한 응급구호 및 장기구호

_____ 주택침수에 대한 보조

_____ 세입자 보조

*재해구호물자의 조달 및 운송.

*재해구호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등 구호 관계자에 대한 재해구호 교육 및 급식.

*그 밖에 시·도지사가 재해구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라. 관리 공무원의 임무

① 기금의 운영계획 수립 및 관리

- 기금관리공무원은 재해구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조성되는 기금의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조성금액은 전 10년간 재해구호 및 복구비용(중앙지원분 포함)의 연 평균 값을 감안하여 재해발생시 이재민 구호 및 피해복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증식효과가 높은 저축성 상품으로 예탁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연도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금융기관에 예탁·관리하여야 함.

② 재해구호기금의 적립

- 기금출납명령관은 재해구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구호적립금액을 미리 결정하여 이를 기금납부 책임이 있는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함.

- 기금출납공무원이 기금을 수령하였을 때에는 기금수입대장에 기록한 후 수입일 또는 익일 까지 기금운영계획에의거 설치된 지정계좌에 입금시켜야 함.

③ 재해구호기금의 지출

- 기금출납명령관은 재해발생시, 재해구호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구호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여야 함.

④ 장부 기록·유지

- 기금출납명령관은 기금관리부와 기금지출원인행위부 및 보조부를 비치하고 기금의 출납과 지출원인행위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함.

- 출납공무원은 기금지출부와 기금수표발행부를 비치하고 기금의 지출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함.

⑤ 재해구호기금의 사용보고

- 재해구호법 제15조에 의거 조성된 기금은 재해구호기금의 용도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



으며, 기금을 사용한 때에는 그 내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함.

- ⑥ 시·도지사는 아래 사항을 작성하여 2003.5.17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2003.5.30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함.

- 자체 재해구호계획 또는 재해구호시행지침
- 시·도별 재해구호 대비현황
- 기금관리공무원 임명 현황
- 재해구호기금의 예탁 및 집행현황

- ⑦ 시·도지사는 재해 발생시 다음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일일보고하여야 함.

(보건복지부 복지지원과 TEL:02-2110-6181~3, FAX:02-504-6232)

- 이재민 구호현황
- 전염병관리·의료구호·식품위생지도 활동실적 보고

- ⑧ 대규모 재해 발생시에는 전국재해구호협회와 대한적십자사는 다음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일일보고 하여야 함.

- <전국재해구호협회>
 - * 의연금품 모금현황
 - * 재해구호물자 보유 및 지원현황
- <대한적십자사>
 - * 재해구호물자 보유 및 지원현황
 - * 급식소 운영 및 자원봉사 현황

6 | 2003년 구호활동 보도일지

	일자	내용	보도사
①	8월 30일	의연금·품 1차 지원내역	연합뉴스, 인터넷사이트 FREECHAL
②	8월 31일	의연금·품 1차 지원내역	대한매일, 중앙일보
③	9월 18일	의연금·품 2차 지원내역	경향신문, 매일경제, 중앙일보
④	9월 19일	의연금·품 2차 지원내역	경향신문, 국민일보, 조선일보, 한겨레
⑤	10월 1일	모금 마감 및 감사 공고	중앙일간지 19개사
⑥	10월	의연금품 접수·지원 총괄 내역	10월 정례반상회보 중앙의제 채택
⑦	10월	의연금품 접수·지원 총괄 내역	방송문화책자 10월호
⑧	12월 16일	동절기 의연금 지원내역	연합뉴스, 한겨레

① (연합뉴스) 2002-08-30 재해대책협, 수재의연금 1차분 186억원 지원

| 최재석 기자 bondong@yna.co.kr |

전국재해대책협의회(회장 최학래)는 정부지원 구호금과 별도로 언론사가 모으고 있는 수재의연금에서 1차분으로 186억원을 경남 김해 등 전국 수해피해 이재민에게 지원했다고 30일 밝혔다. 1차 지원분은 이날 현재 전국 언론기관에 기탁된 수재의연금 236억원(ARS 15억8천만원 제외) 가운데 일부가 긴급 사용된 것이다.

이재민당 지원금액은 사망자 1천만원, 부상자 500만원, 주택전파세대 404만원, 주택반파세대 242만원, 침수주택 60만원, 농작물피해 장기구호세대 92만 116만원이다.

또 경남의 특별재해지역 침수주택에는 80만원이 추가됐다고 전국재해대책협의회는 덧붙였다.

② (대한매일) 2002-08-31 언론사 모금 수재의연금 186억 김해 이재민에 전달

| 노주석 기자 joo@kdaily.com |

전국재해대책협의회(회장 崔鶴來)는 30일 정부지원 구호금과 별도로 언론사가 모으고 있는 수재의연금 중 1차분 186억원을 경남 김해 등 전국 수해피해 이재민에게 지원했다.

1차 지원분은 이날 현재 전국 언론기관에 기탁된 수재의연금 236억원(ARS 15억 8000만원 제외) 가운데 일부이다.

③ (한겨레) 2002-08-31 언론사 수재의연금 1차분 전달

전국재해대책협의회(회장 최학래 한겨레신문사 대표이사)는 30일 전국언론기관에서 모집중인 수재의연금 가운데 1차분 186억원을 경남 진해 등 전국의 수해지역 이재민에게 지원했다. 이재민에게 지원되는 금액은 사망자 1천만원 부상자 500만원 주택전파 세대 404만원 주택반파세대 242만원 침수주택 60만원 등이다.

④ (국민일보) 2002-09-19 수재의연금 1000억원 넘어...680만명 참여

| 장덕수기자

보건복지부는 17일 현재 수재의연금이 1007억원 모금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과거 최고 모금액인 1998년 수재의연금 683억원을 훨씬 초과한 것으로 수재의연금이 1000억원대를 넘어서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는 일반국민 282억원, 30대기업 233억원, 중소기업 160억원, 금융업계 104억원, 학생 110억원, 공무원 78억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40억원을 모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지금까지 수재의연금 모금에 2000여개 기업과 단체, 일반국민과 학생 등 680만명이 참여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김성호 복지부장관과 전국재해대책협의회는 이날 태풍 '루사'로 사상 유례없는 이재민과 재산피해를 본 강원도에 407억4550만원의 위로금을 전달하는 등 지금까지 수재의연금 774억원을 지원했다.

⑤ (경향신문) 2002-09-19 수재의연금 1천억 돌파

| 조운천기자 sidol@kyunghyang.com

보건복지부와 전국재해대책협의회는 지난달 12일 수재의연금 모금운동을 시작한 후 지난 17일 현재 모두 1천7억원이 모금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역대 수재의연금 최고 모금액인 1998년의 6백83억원을 3백20억원 이상 초과한 금액이다.

모금내역은 일반 국민이 2백82억원(29%)을 기부했으며 30대 기업 2백33억원(24%), 중소기업 1백60억원(17%), 학생 1백10억원, 금융업계 1백4억원(11%), 공무원 78억원(8%), 사회복지공동모금회 40억원(4%)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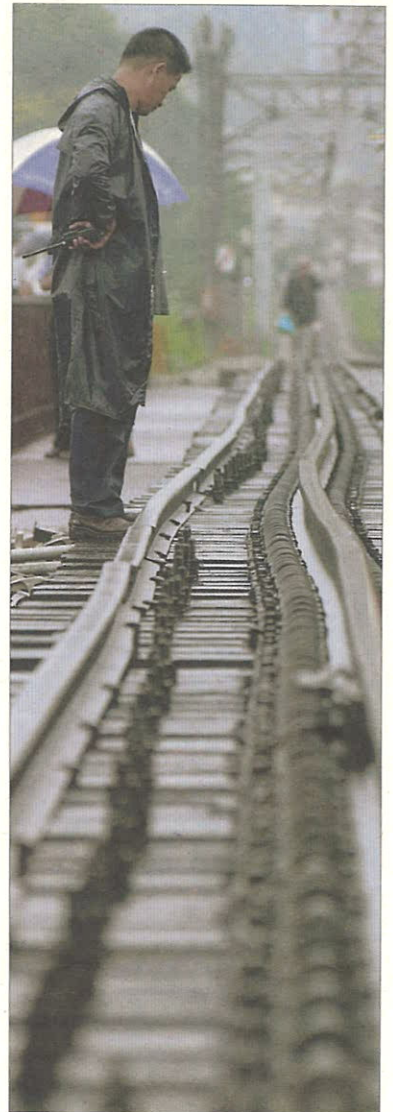
⑥ (한겨레) 2002-09-19 더불어 살만한 세상/수재의연금 1천억 넘어

| 허종식 기자 jongs@hani.co.kr

수재의연금이 사상 최대로 1천억원을 넘었다.

보건복지부와 전국재해대책협의회는 17일까지 모두 1007억원의 수재의연금이 모금돼 역대 최고 금액이라고 18일 밝혔다. 이 모금액은 지금까지 최고였던 1998년 집중호우 때의 683억원을 훨씬 넘는 금액이다.

모금액은 일반국민 282억원, 30대 기업 233억





원, 중소기업 160억원, 금융업계 104억원, 학생 110억원, 공무원 78억원이다. 이번 모금은 특히 태풍으로 피해를 당한 이웃과 아픔을 함께하려는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모금에 참여하면서 2000여개의 기업·단체와 국민, 학생, 공무원 등 모두 680만명이 참여했다.

⑦ **[한겨레]** 2002-09-19 재해대책협의회·복지부 /수해성금 407억원 전달

| 춘천/김종화 기자 kimjh@hani.co.kr |

전국재해대책협의회 최학래(한겨레신문사 사장) 회장과 김성호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강원도청을 방문해 이재민 대표에게 위로금 407억원을 전달했다.

최 회장과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수해를 당한 이재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추석 전에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며 "아픔을 당한 이재민들이 국민의 성원에 힘입어 하루빨리 정상생활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⑧ **[조선일보]** 2002-09-19 수재의연금 1000억원 돌파·680만명 참여 '사상최고'

| 박중현 기자 jhpark@chosun.com |

영남지역 집중호우와 태풍 '루사'로 인한 수재민들을 돕기 위해 모금된 수재의연금이 18일 1000억원을 돌파, 104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과거 최고 모금액인 98년 집중호우 때의 683억원보다 47% 증가한 액수다. 이 수재의연금 모금에는 2000여개 기업과 단체, 680여만명의 국민이 참여한 것으로 추산됐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도 수해 피해가 극심한 점을 감안, 이웃돕기 성금으로 모아놓았던 40억원을 이번 수재민 지원에 사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전국재해대책협의회는 수재의연금이 추석 전에 수재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날 558억원을 5만4800가구에 지원했다.

⑨ **[한겨레]** 2002-12-17 수해지역 겨울나기 물품 지원

| 김순배 기자 marcos@hani.co.kr |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최학래)는 16~17일 강원도 영월 및 동해 삼척 속초 양양 등 강원도 수해지역에 점퍼, 코트, 이불류 등 겨울나기 구호물품 5만6천여점을 지원했다.

협회는 강원도 주문진읍 등 3곳을 방문해 323가구에 3630여점의 구호물품을 직접 전달하고, 5만3천여점의 구호물품은 강원도를 통해 지원했다.